

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및 제출경과

- 가. 의안번호 : 제790호
- 나. 제 안 자 : 황철규 의원 (찬성자 54명)
- 다. 제 안 일 : 2023. 5. 30.
- 라. 회 부 일 : 2023. 6. 5.

2. 제안이유

- 청년기본법 개정에 따른 청년공간 유형 및 기능 체계 개편
- 청년공간 유형 및 기능 체계 개편에 따른 공간 명칭 변경

3. 주요내용

- 가. ‘청년활동지원센터’, ‘청년허브’로 이원화 되어 있는 광역형 청년공간 통합 및 ‘서울광역청년센터’로 공간유형 명칭 변경 (안 제20조 제1항)
- 나. ‘청년활동지원센터’, ‘청년허브’의 조례상 기능 통합 및 정비(안 제20조 제2항)
- 다. 취약계층 청년 지원사업, 대외협력사업, 청년지원사업 공간 지원 등을 포함하여 자치구별 ‘서울청년센터’ 기능 강화(안 제20조 제3항)
- 라. ‘서울청년센터’ 기능에서 “취약계층 청년”의 정의를 청년기본법상의 용어 정의를 반영하여 의미 명확화(안 제3조 제8호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청년기본법」, 「청년기본법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

다. 입법예고(2023.6.8. ~ 6.12.) 결과 : 의견 없음

라.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

- 서울시장(미래청년기획단) : 원안 가결

5. 검토 의견

가. 조례안 개요

- 이번 「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 상위법인 「청년 기본법」(2023.3.21. 개정, 2023.9.22. 시행) 개정으로 청년시설 설치·운영 및 위탁 근거가 명시되고, 지방자치단체·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서울시 청년시설의 유형 및 기능을 개편·조정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
- 「청년기본법」 제3조 제5호에 “취약계층 청년”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청년정책 수립·시행 시 “취약계층 청년”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 마련하도록 노력해야한다는 규정이 추가됨에 따라 이를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
-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제8호는 “취약계층 청년”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고,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기존 청년지원기관의 명칭 변경과 그 기능을 재조정하는 내용을 담고있음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 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1호~7호 (생략) < 신 설 >	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1호~7호 (현행과 같음) 8. "취약계층 청년"이란 고용·교육·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.
제20조(청년지원기관의 설치·운영)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'서울특별시 청년허브', '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센터', 자치구별 '서울청년센터' 등 청년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. ② 서울특별시 청년허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 1. 청년 커뮤니티 및 단체활동 지원, 공간운영	제20조(청년지원기관의 설치·운영) ① _____ _____ '서울광역청년센터', _____ _____ _____ _____ ② 서울광역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 1.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능력개발 및 진

현 행	개 정 안
<p>지원을 위한 사업</p> <p>2. 국내외,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소통체계 활성화</p> <p>3. 청년의 취업·창업 등 일자리 진입 지원을 위한 시의 정책개선 및 혁신사업 실행</p> <p>4. 정책 수립·운영을 위한 연구조사 및 자료·정보 집적과 공유</p> <p>5.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/p>	<p>로모색 사업</p> <p>2. 청년의 심리적 안정 및 자립지원, 취약계층 청년 지원 등 사회안전망 사업</p> <p>3. 서울청년센터 운영 지원 및 성과관리·평가</p> <p>4. 청년지원 전문인력 육성사업</p> <p>5. 지역단체, 시설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대외 협력 사업</p> <p>6.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및 교류 지원</p> <p>7. 청년 커뮤니티 및 단체활동 지원, 공간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</p> <p>8. 정책 수립·운영을 위한 연구조사 및 자료·정보 집적과 공유</p> <p>9. 그 밖에 청년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/p>
<p>③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</p> <p>1.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능력개발 및 진로모색 사업</p> <p>2. 청년의 심리적 안정 및 자립지원 등 사회안전망 사업</p> <p>3. 청년지원 전문인력 육성사업</p> <p>4.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 지원·교육·평가</p> <p>5. 그 밖에 청년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/p>	<p>③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</p> <p>1. 청년지원정보 집적·제공 및 분야별 종합상담 사업</p> <p>2. 청년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을 위한 사업</p> <p>3. 청년의 심리적 안정 및 자립지원, 취약계층 청년 지원 등 사회안전망 사업</p> <p>4. 지역단체 및 시설 등과의 연계 및 대외 협력 사업</p> <p>5. 생활권 기반 청년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공간 지원</p> <p>6. 지역별 청년 활동 공간 및 기반 제공</p> <p>7. 그 밖에 청년의 생활권 기반 정책 접근성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</p>
<p>④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</p> <p>1. 청년지원정보 집적·제공 및 분야별 종합상담 사업</p> <p>2. 청년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을 위한 사업</p> <p>3. 지역별 청년 활동 공간 및 기반 제공</p> <p>4. 그 밖에 청년의 생활권 기반 정책 접근성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</p>	<p><삭 제></p>
<p>⑤ (생략)</p>	<p>④ (현행 제5항과 같음)</p>
<p>⑥ (생략)</p>	<p>⑤ (현행 제6항과 같음)</p>

나. 조례안 검토 내용

(1) “취약계층 청년” 정의 (안 제3조 제8호)

- 「청년기본법」 개정으로 같은 법 제3조 제5호에 “취약계층 청년”의 정의가 새롭게 추가되었으며, 같은 법 제4조제6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‘청년정책을 수립·실시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한다’는 훈시규정 또한 추가되었음

「청년기본법」 (2023. 3. 21. 개정, 2023. 9. 22. 시행)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~ 4. (생략)

5. “취약계층 청년”이란 고용·교육·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.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~ ⑤ (생략)

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을 수립·실시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8조(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) ①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③ 기본계획에는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.

-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“취약계층 청년”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라는 의미로 해석되며, 따라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용어 정의에 “취약계층 청년”을 추가하는 것은 타당하고, 그 내용은 상위법인 「청년기본법」과 동일한 점, 약자와의동행 가치를 실현하는 측면에서 적절해 보임
- 다만 상위법령과의 정합성과 통일성을 고려하고,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「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」 제6조제2항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‘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’을 명시하는 등 시장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

(2) 청년지원기관의 유형 개편 및 기능조정 (안 제20조제1항~제3항)

-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청년지원기관의 ▲명칭을 변경하고, ▲ 3개로 구분된 청년지원기관 유형을 2개로 통합하여 ▲그 기능을 조정하는 내용으로, 체계적이지 못한 현행 서울시 청년지원기관 및 청년공간의 효율적 재구조화 추진을 지원하는 동시에 「청년기본법」 개정으로 국가의 청년지원센터의 지정 및 경비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대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해됨
- 서울시 청년정책 발전과정에서 여러 유형의 청년지원기관과 청년공간 등이 별도의 체계없이 신설, 확충되어 균질한 청년정책의 집행과 효율적인 역할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, 청년지원기관의 체계 개편과 재구조화에 대한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당위성이 인정됨

「청년기본법」 (2023. 3. 21. 개정, 2023. 9. 22. 시행)

제5장 청년정책 추진기반 구축

제24조의2(청년시설의 설치·운영 등) ① **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**

② ~ ④ (생략)

제24조의3(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) ① **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청년발전 및 청년지원과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.**

② ~ ③ (생략)

제24조의4(청년지원센터의 지정 등) ① **국무총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 인력 및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청년단체등 또는 청년시설을 지역별 청년지원센터(이하 "지역센터"라 한다)로 지정할 수 있다. 1. ~ 5. (생략)**

② **국무총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총괄하고 지역센터의 사업을 조정·관리하기 위하여 전담 인력 및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청년정책 관련 전문기관·단체를 중앙청년지원센터(이하 "중앙센터"라 한다)로 지정할 수 있다.**

③ **국무총리는 지역센터 및 중앙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**

④ ~ ⑥ (생략)

□ 서울시 청년지원기관 제도변천 과정

청년정책
형성기
(11.10~14.6)

- 청년허브 신설('13.4)
- 청년일자리팀 신설('12.1), 청정넷 활동시작('13.8)

※ (법제도 변화) 청년일자리 기본조례 제정('13.10)

청년정책
제도화기
(14.7~18.6)

- 무중력지대 대방('15.4), 청년활동지원센터('16.7), 교류공간('18.3) 설치
- 청년정책담당관 신설('14.11), 청정넷 청년의회 사업신설
- 무중력지대 양천·도봉·성북·서대문 설치('18.2~'18.7.)

※ (법제도 변화) 서울시 청년기본조례 제정('15.1)

청년정책
발전기
(18.7~22.12)

- 지역별 서울청년센터 개관('20.2)
- 청년청 신설(1과 7팀), 미래청년기획단 조직개편(1단 2반 8팀)
- 무중력지대 영등포 설치('19.8.)
- 서울청년센터 '20년 8개소, '21년 2개소, '22년 2개소 설치

※ (법제도 변화) 청년기본법 제정('20.2),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('20.10)

- 청년지원기관 유형 개편과 명칭 변경 부분을 살펴보면, 현재 '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센터', '서울특별시 청년허브', 자치구별 '서울청년센터' 로 3가지로 구분된 유형을 '서울광역청년센터' 와 자치구별 '서울청년센터' 2가지로 조정하는 내용임
- 이는 유형 간소화를 통해 청년지원기관의 기능 중복을 방지하고, 광역-지역 구조로 효율적인 위계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, 이러한 광역-지역 청년지원기관 구조는 국무조정실의 국가 청년정책 전달체계 추진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¹⁾

□ 서울시 청년지원기관 개편안

- 기존 3개 유형(광역형 2, 지역형 1) → 2개 유형(광역형 1, 지역형 1)

광역형	청년활동지원센터	→	서울광역청년센터
	청년허브		
지역형	서울청년센터 (자치구별)		서울청년센터 (자치구별)

- 다음으로 청년지원기관의 기능 조정안을 살펴보면 기존의 ‘청년활동지원센터’와 ‘청년허브’의 기능을 ‘서울광역청년센터’로 통합하면서 “취약계층 청년” 지원 내용을 추가하여 「청년기본법」 상 “취약계층 청년”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의 책무를 반영하였음
- 다만, 기존 기능 중 ‘청년의 취업·창업 등 일자리 진입 지원을 위한 시의 정책개선 및 혁신사업 실행’은 삭제되었는바, 이는 「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²⁾」, 「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³⁾」를 근거로 경제정책실 소관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청년지원기관의 기능 중복을 제거하고 일자리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결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

□ 서울광역청년센터 기능 조정안			
구 분	청년활동지원센터	청년허브	서울광역청년센터
지역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 지원·교육·평가 · 청년지원 전문인력 육성사업 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 운영 지원 및 성과관리·평가 · 청년지원 전문인력 육성사업
청년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청년의 심리적 안정 및 자립지원 등 회안전망 사업 · 구직활동 지원 위한 능력개발, 진로모색 사업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청년의 취업·창업 등 일자리 진입 지원 · 청년 커뮤니티 및 단체활동 지원, 공간운영 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청년의 심리적 안정 및 자립지원, 취약계층 청년 지원 등 사회안전망 사업 · 청년 구직활동 지원 위한 능력개발, 진로모색 사업 · 청년 커뮤니티 및 단체활동 지원, 공간운영 지원
대외협력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, 소통체계 활성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지역 청년단체, 청년시설 등 협력체계 구축 ·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및 교류 지원
정책개발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정책 수립·운영을 위한 연구조사, 자료·정보 집적과 공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정책 수립·운영을 위한 연구조사, 자료·정보 집적과 공유

1) 국무조정실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(‘21~’25) 및 2023년 청년정책 시행계획(‘23.3.29.) 참고

2) 「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」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」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여 청년의 삶의 수준 향상과 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발전 및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3) 「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기본 조례」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- 서울시 청년지원기관 개편 후 자치구별 ‘청년지원센터’에도 기능을 추가하고 있는데 이중 ‘서울광역청년센터’와 중복되는 기능을 살펴보면,
- ‘청년의 심리적 안정 및 자립지원, 취약계층 청년 지원 등 사회안전망 사업’은 최근 중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립·은둔 청년문제와 같이 현장 중심의 발굴, 상담, 사후관리 등이 효율적인 측면이 있으며, 자치구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추진을 위해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
- ‘지역단체 및 시설 등과의 연계 및 대외 협력사업’은 「청년기본법」 제24조2 제1항의 ‘지역별 청년지원센터’ 지정기준⁴⁾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

〈 개편 후 청년지원기관 기능 〉

서울광역청년센터	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
1.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능력개발 및 진로모색 사업	1. 청년지원정보 집적·제공 및 분야별 종합상담 사업
2. 청년의 심리적 안정 및 자립지원, 취약계층 청년 지원 등 사회안전망 사업	2. 청년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을 위한 사업
3. 서울청년센터 운영 지원 및 성과관리·평가	3. 청년의 심리적 안정 및 자립지원, 취약계층 청년 지원 등 사회안전망 사업
4. 청년지원 전문인력 육성사업	4. 지역단체 및 시설 등과의 연계 및 대외 협력 사업
5. 지역단체, 시설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대외 협력 사업	5. 생활권 기반 청년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공간 지원
6.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및 교류 지원	6. 지역별 청년 활동 공간 및 기반 제공
7. 청년 커뮤니티 및 단체활동 지원, 공간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	7. 그 밖에 청년의 생활권 기반 정책 접근성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8. 정책 수립·운영을 위한 연구조사 및 자료·정보 집적과 공유	
9. 그 밖에 청년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	

4) 「청년기본법」 제24조의2(청년지원센터의 지정 등) ① 국무총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(중략) 청년시설을 지역별 청년지원센터(이하 “지역센터”라 한다)로 지정할 수 있다.
2. 지역 청년단체, 청년시설 등과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

라. 종합 의견

- 이번 「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 ▲“취약계층 청년”에 대한 정의와 “취약계층 청년” 지원 기능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과 ▲현행 서울시 청년지원기관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 그 기능을 재조정하는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음

- 상위법인 「청년기본법」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“취약계층 청년”의 정의를 추가하고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관련 법령과의 통일성 유지와 약자동행 가치 확산의 측면에서 그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됨

- 청년지원기관에 대한 규정 정비는 비효율적 체계의 서울시 청년지원기관, 청년공간(시설)의 재구조화를 통해 효과적인 청년정책 추진·전달체계를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, 청년지원기관별 기능을 조정하여 기존의 역할 모호성에 따른 업무 중복을 일정 부분 해소해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고, 정책추진 근거를 확실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

- 다만, 「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」 규정에 ‘청년지원기관’, ‘청년시설’이 동시에 규정되어 있는 반면에 그 정의나 구분은 확실치 않고 서울시에서도 정확한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는 점, 유사한 용어인 ‘청년공간’에 대해서는 「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점 등 혼란 가능성이 남아있어 향후 지속적인 검토와 논의를 통해 이를 정비하고 해소해 나가야 할 것임

	시 설 명	소재지	규모	인력	운영방법	수탁기관	위탁기간	개관	
1	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	용산구 원효로 97길 15	2,281㎡	25	서울시 민간위탁	(재)서울현대교육재단 (사)한국디지털컨버전스협회	'21.7.1.~'23.12.31. *재위탁 1회	'16.7.	
2	서 울 청 년 센 터 (15)	관악	관악구 신림로 91, 302호	329㎡	6	자치구 민간위탁	(사)꿈지락네트웍	'19.7.1.~'24.9.30. *재계약 1회	'20.2.
3		금천	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20 G밸리창업복합센터 1~2층	345㎡	6	서울시 민간위탁	(재)서울현대교육재단	'23.3.1.~'23.12.31. *재위탁 1회	'20.2.
4		강동	강동구 올림픽로 796, 4층	403㎡	6	자치구 민간위탁	미담장학회	'23.1.1.~ '25.12.31. *재위탁 1회	'20.5.
5		은평	은평구 통일로 67길 9, A동 2층 불광로1길 2-4, B동 1~4층	545㎡	6	자치구 민간위탁	(사)희망유니온	'23.1.1.~'25.12.31. *재위탁 1회	'20.6.
6		동대문	동대문구 왕산로 210	481㎡	6	서울시 민간위탁	(사)희망유니온	'23.3.1.~'23.12.31. *재위탁 1회	'20.12.
7		노원	서울 노원구 동일로 1405 노원금융타워 9층	331㎡	6	자치구 민간위탁	(사)청소년과나란히	'20.9.1.~'23.8.31.	'20.9.
8		성동	성동구 왕십리로 350 4~5층	314㎡	6	자치구 민간위탁	성동청년플랫폼	'22.10.1.~'25.9.30. *재위탁 1회	'20.12.
9		마포	마포구 월드컵로1길 14, 지 상 1층 제P101호	264㎡	6	자치구 민간위탁	(사)플레이시드스쿨	'23.2.1.~'25.12.31. *재위탁 1회	'20.12.
10		광진	광진구 능동로 245, 2~3층	385㎡	6	자치구 민간위탁	사회적협동조합 함께시작	'20.1.1.~'23.12.31 *재계약 1회	'21.1.
11		서초	서초구 반포동 19-11	556㎡	6	서울시 민간위탁	(사)청년여성 문화원	'21.6.1.~'23.12.31.	'21.10.
12		강북	강북구 노해로23길 123(수 유동) 1~3층	331㎡	6	자치구 민간위탁	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	'22.1.26.~'24.12.31	'22.4.
13		강서	강서구 화곡동 1170	602㎡	6	서울시 민간위탁	미담장학회·청년 교육 사회적협동조합 씨드콤플	'22.3.21.~'23.12.31	'22.4.
14		영등포	당산로 83, 2층	502㎡	4	자치구 직접운영(한시)	구의회 등의 시 공개모집 예정('24년)		'23.2
15		도봉	도봉구 마들로11길 75	440.97㎡	6	자치구 위수탁 업무협약	도봉문화재단	'23.1.1.~'25.12.31.	'23.5.
16		양천	양천구 오목로 359	386㎡	6	자치구 민간위탁	서울지역사회교육협의회	'23.5.1.~'26.4.30.	'23.5.
17	청년허브	은평구 통일로 684	1,786㎡	14	서울시 민간위탁	사단법인 씨즈	'21.1.1.~'23.12.31. *재계약 1회, 재위탁 1회	'13.4.	

□ 청년활동지원센터

구분		2021년	2022년	2023년
인력	정원	34명	34명	25명
	현원	34명	34명	26명
조직		2실 6팀	2부 7팀	2부 5팀
예산 (천원)		3,468,138천원	2,956,800천원	2,413,418천원
주요사업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청년수당 참여자 지원 · 온라인고민상담소 운영 · 그룹마음상담 운영 · 자기이해프로그램 운영 · 사회적기술훈련 운영 · 지역센터 운영 지원 · 청년지원매니저 양성 · 청년정책 정보 제공 · 조사·분석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청년수당 참여자 지원·조사 · 지역센터 성과관리·평가 · 온라인고민상담소 운영 · 그룹마음상담 운영 · 자기이해진로설계 프로그램 · 영케어러케어링 사업 · 상담지원 전문인력 교육 · 청년정책 정보제공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지역센터 운영 지원 · 지역센터 성과관리·평가 · 청년지원 전문인력 양성 · 청년정책 정보 제공 · 청년수당 참여자 지원 · 마음상담 지원 사업 · 대외협력 및 연계사업 · 청년정책 연구·아카이빙

□ 청년허브

구분		2021년	2022년	2023년
인력	정원	25명	20명 (△5명)	14명 (△6명)
	현원	20명	18명 (△2명)	11명 (△7명)
조직		2실 6팀	1실 5팀	3팀
예산 (천원)		2,575,619천원	2,160,000천원 (△415,619천원)	1,566,000천원 (△594,000천원)
주요사업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세대 간 연계 · 청년활동지원 · 청년문제해결 거점공간 운영 · 국제교류 · 의제 발굴 및 정책연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지역 및 세대연계 프로그램 운영 · 일경험 지원 프로그램 · 취약청년 발굴 및 서비스 제공 · 청년정책 연구 활동 · 글로벌 솔루션랩 운영 · 청년연구·혁신활동가 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서울시 청년정책 발굴·홍보 · 청년 미래일자리 모델 사업 · 사회적 고립 청년 적합 일자리 개발사업 · 글로벌 청년의제 포럼 및 교류 지원 · 광역 청년공간 사업통합 준비

※ 청년공간 재구조화 추진에 따라 광역센터(청년활동지원센터, 청년허브) '23년 조직·사무 축소

□ 운영개요

- 운영시간 : 월~금 10~22시, 토요일 10~17시 운영 권장
- 인력구성 : 센터장(1), 기타 종사자 5명

직위/직급	주요업무	인원
센터장(팀장)	○ 센터총괄, 대외협력	1명
선임매니저	○ 사업총괄(예산 및 행정)	1명
매니저	○ 종합상담 운영(전담인력) 1, 정보집적 및 콘텐츠 구성 1	2명
매니저	○ 커뮤니티 사업 및 공간운영 1, 지역 자율사업/홍보 1	2명

○ 주요 사업내용

구분	사업명	세부내용	비고
필수	종합상담 및 자원연계	오프라인 종합상담 운영, 온라인 채널 운영	<서울청년센터 오랑 사업운영 매뉴얼> 준수
	청년지원정보 제공	권역 내 청년지원정보 집적(지역정보) (지역)정보 제공 서비스 운영	
	커뮤니티 지원 프로그램	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커뮤니티 모임 운영 및 지원(ex. 관계망형성형, 모임지원형 등)	
	청년공간 운영	청년공간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	
자율	지역자율 프로그램	지역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	사업비 내 최대 20% 편성

□ 권역별 현황 : 12개소를 거점으로 인근 자치구 지원

